

2025 Cosmetic Industry Insights Report

과대포장

Oct 2025



국내 과대포장 및 포장재 정의

과대포장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상한을 넘긴 포장

단위제품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
(포장재를 씌운 횟수에 따라
몇 차 포장인지 구분)



1차 포장



2차 포장

종합제품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



※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이 아닌 항목

1.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2.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3.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

일회용 수송포장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
(이외 수송을 목적으로하는 제품포장에는 미적용)



※ 완충재를 넣은 공간은
빈 공간으로 구분

국내 과대포장 규제

구분	자원재활용법	근거법률															
대상 제품	✓ 화장품류 및 음식료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등 ✓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7조															
포장방법 의무기준 (화장품 제품 기준으로 작성)	<table><tr><th colspan="2">기준</th><th>포장공간비율</th><th>포장횟수</th></tr><tr><td rowspan="2">단위 제품</td><td>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td><td>15% 이하</td><td>2차 이내</td></tr><tr><td>그 외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td><td>10% 이하</td><td>2차 이내</td></tr><tr><td colspan="2">종합제품</td><td>25% 이하</td><td>2차 이내</td></tr></table> • 포장공간비율 : 포장재의 부피에서 제품의 부피를 제외한 빈공간의 비율을 의미 • 포장횟수 : 겹포장·속포장·낱포장 같은 명칭 대신, 포장재가 제품을 완전히 감싸는 횟수로 단순하게 산정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 제품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외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10% 이하	2차 이내	종합제품		25% 이하	2차 이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 제품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외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10% 이하	2차 이내														
종합제품		25% 이하	2차 이내														
방법론	포장공간비율 = (포장재 부피 - 제품 부피) / 포장재 부피 x 100 • 포장재 부피 : 내측 기준(길이, 폭, 높이)으로 산정 • 제품 부피 : 완충/보호를 사용하는 경우, 길이, 폭, 높이에 각 5mm를 가산하여 산정	환경부 고시「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 측정 방법」 제4조, 별표2															
행정 제재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위반 : 300만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50조, 별표 8															

소비자에게 수송되는 택배에도 시작된 규제

국내에서는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30일 이후부터,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해서도 포장 방법 준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1회용 수송 포장	50% 이하	1차 이내

-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 또는 평균매출액이 500억 원 미만인 기업에 한해서 면제
- 개인간 거래, 해외 직구는 규제 미대상
- 수송포장공간 비율 측정 방법론 별도 존재

잠정적 규제대상



유통업체 **132만 개**

제품종류 **1천만 개**

국내 과대포장 판단 기준 알아보기

과대포장 산정을 위한 3가지 포인트

제품 종류별 의무기준을 확인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단위제품 - 그 외의 화장품류 (방향제 포함)	10% 이하	2차 이내
종합제품	25% 이하	2차 이내
수송포장	50% 이하	1차 이내

1. 제품의 종류에 따라 포장공간비율 과 포장횟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 화장품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 2026년 4월 30일 이후부터는
수송포장에 대해서 규제 시행 예정

2.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을 구분해야 제품의 종류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위제품 :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
- 종합제품 :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
 - ✓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ml 또는 30g이하)의 샘플용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과 함께 포장된 제품은 종합제품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3. 세부 산정방법론은 환경부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단위제품 또는 종합제품 포장 : 환경부 고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 측정 방법」 제4조, 별표2
- ✓ 수송 포장 : 환경부 고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 측정 방법」 제4조, 별표3

일본 과대포장 규제



일본

도쿄 소비자생활조례, 오사카 소비자보호조례

대상 제품

보석·귀금속류 및 미술품예품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 상품의 소비자 포장

포장방법
의무기준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비용비율
도쿄	20% 이하	15% 이하
오사카	15% 미만	15% 미만

- 일본 내 과대포장 관련 국가 법률이 부재하여 지방 정부의 정책 도입 여부와 내용에 따라 상이함
- 도쿄와 오사카에서는 포장공간비율 뿐만 아니라 포장비용비율까지 제한

방법론
(도쿄 기준)

포장공간비율 = (포장재 부피 - 제품 부피) / 포장재 부피 x 100

- 포장재 부피 : 내측 기준(길이, 폭, 높이)으로 산정
- 제품 부피 : 완충/보호재를 사용하는 경우, 길이, 폭, 높이에 각 10mm를 가산하여 산정

포장비용비율 = (전체 판매가 - 제품 개별 판매가) / 전체 판매가 x 100

- 전체 판매가 : 상품의 총 판매가
- 제품 개별 판매가 : 제품이 차지하는 판매 원가

행정 제재

지방 정부의 지도·권고

대만 과대포장 규제



대만

과대포장 제한 규정(Regulation on Excessive Packaging Restriction)

대상 제품

화장품·과자·주류·가공식품 및 SW디스크

포장방법
의무기준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화장품, 주류, 가공식품	25% 이하	2차 이내
단일소재 포장인 화장품, 주류, 가공식품	35% 미만	2차 이내

- 대만에서는 과도한 공간비율 뿐 아니라 다양한 소재 사용이 과대포장 요소로 지적되므로, 단일 소재 포장을 장려하기 위해 동일 기준보다 완화된 포장공간비율을 허용

방법론

$$\text{포장공간비율} = \{\text{포장재 부피} - (\text{제품 부피} \times \text{공간계수})\} / \text{포장재 부피} \times 100$$

- 포장재 부피 : 외측 기준(길이, 폭, 높이)으로 산정
- 제품 부피 : 제품의 길이, 폭,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
- 공간계수 : 2.0 (화장품 제품 기준)
- 단일소재 포장이란 내용물을 담은 1차 포장을 제외한 포장재가 전부 단일소재인 경우이며, 인쇄/라벨/테이프 제외

행정 제재

- 1차 위반 : 30,000~150,000 신 타이완 달러(원화 약 140만원~700만원) 행정벌금 및 기한 내 개선 조치 미이행 시, 초과 일수만큼 과태료 부과
- 중대 위반 : 1개월~1년 내 영업정지 처분, 또는 폐업처분
 - 1년 내에 두 번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동일한 규정을 계속 위반하는 경우
 - 재활용자원을 규정에 따라 재활용 및 재사용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경우
 - 허위 신청서, 보고서 및 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 기타 관할 기관이 인정하는 상황인 경우

중국 과대포장 규제



중국

GB23350—2021(식품 및 화장품의 과대 포장을 제한하는 것에 관한 요구)

대상 제품

식품 및 화장품

포장방법
의무기준

단품 순함량(Q) mL 또는 g	포장공간비율	포장비용비율	포장횟수
Q≤1	85% 이하	20% 이하	4차 이내
1<Q≤5	70% 이하		
5<Q≤15	60% 이하		
15<Q≤30	50% 이하		
30<Q≤50	40% 이하		
Q>50	30% 이하		

방법론

$$\text{포장공간비율} = \{\text{포장재 부피} - (\text{내용물 부피} \times \text{공간계수})\} / \text{포장재 부피} \times 100$$

- 포장재 부피 : 외측 기준(길이, 폭, 높이)으로 산정
- 내용물 부피 : 포장 내에 담긴 화장품의 양
- 공간계수 : 상품에 필요한 공간 계수, [중국 규제 알아보기 페이지](#) 내 수록

$$\text{포장비용비율} = \text{포장비용} / \text{제품 판매가} \times 100$$

- 포장 비용 : 2차 포장에서 가장 바깥쪽 N 번째 횟수까지의 모든 포장 재료 비용의 합계
- 제품 판매가 : 상품 제조업체와 판매자가 체결한 계약 판매 가격 또는 상품의 정상 시장 판매 가격

행정 제재

제품의 중국 내 수입, 판매 금지

EU, 독일, 프랑스, 영국 과대포장 규제

 독일 VerpackG 제4조	 프랑스 Code de l'environnement R.543-44조	 영국 The Packaging Regulations 2015 SCHEDULE 1 (1)
포장의 부피와 질량은 포장될 상품에 필요한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제한 되어야 한다.	포장은 충분한 수준의 안전성, 위생성 및 수용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피와 질량으로 제한 되도록 설계 및 제조되어야 한다.	포장은 포장 제품 및 소비자에게 필요한 수준의 안전성, 위생, 수용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부피와 중량이 최소한의 적정 수준으로 제한 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유럽	EU PPWR 제10조	EU PPWR 제24조
대상 주체	2030년부터 제품을 제조 ·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대상 제품	모든 포장재	
포장방법 의무기준 (방법론)	2027년 2월 12일까지 모든 포장재 대상 최소화 요건 준수 기준과 측정 방법론 처벌 규정 제정	1. 그룹 포장, 운송 포장 또는 전자상거래 포장 대상 포장 공간 비율 50% 제한(방법론 2028년 2월 12일까지 채택 예정) 2. 판매용 포장 대상 최소 수준으로 빈 공간 확보 의무 (빈 공간은 판매용 포장재 총 내부 부피에서 포장된 제품의 부피를 제외한 값을 의미)
행정 제재	의무 불이행 정도에 비례한 처벌 예정이며, 제24조 미준수 시 처벌에 행정 벌금이 추가 (처벌 규정 2027년 2월 12까지 제정 예정)	

미국 과대포장 규제



US FAIR PACKAGING AND LABELING PROGRAM(FPLP) 제1454조

- 기능적 목적 없이 남겨진 빈 공간(Slack fill) 제제(산정방법론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과대 포장 관련 소송은 주로 소비자 기만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결정함)
- 위반에 대해 최대 10,000달러(한화1천4백만 원)의 벌금 부과(제45조)



Compact by Design

소개



[아마존 자체 인증]

제품이나 패키징에서 수자원, 부피, 무게를 줄임으로써
제품 배송 시 탄소 배출감축에 기여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부여된다.

대상 제품

아마존에 등록된 브랜드와 연계되어 있고, 적절한 카테고리에 속한 제품

단위효율 인증기준

제품 유형	단위효율(액체)	단위효율(고체)
스킨, 로션, 세럼, 젤, 오일, 크림	18% 이하	21%이하
바디 워시, 샤워 젤, 클렌저	21%이하	13% 이하
헤어 샴푸	18% 이하	-
헤어 염색약	15% 이하	25% 이하
립밤	-	35% 이하

[* 인증 가능한 제품의 모든 목록과 제품별 인증 기준 확인하기](#)

방법론

제품 단위효율 산정식

단위 효율성은 품목 패키지 크기, 품목 무게 및 단위 수와 같은 제품 속성을 사용하여 제품의 단위 효율성을 계산하여 설정된 의무기준보다 낮아야 Compact by design인증을 받을 수 있다.

$$\frac{\text{제품부피(가로}\times\text{세로}\times\text{높이)} \text{ inches}^3}{\text{단위 용량 oz(fl.oz.)}} \times \frac{\text{제품무게 ibs}}{\text{단위 용량 oz(fl.oz.)}} = \text{단위효율 } \left(\frac{\text{inches}^3 \times \text{ibs}}{\text{oz(fl.oz.)}^2} \right)$$

- 제품부피 : 포장된 제품의 부피 inches³
- 제품무게 : 포장된 제품의 무게 pound, ibs
- 단위용량 : 화장품 내용 용량 oz(fl.oz.)

참고자료

[\[대한화장품협회\] 2025 ESG 인사이트 리포트\(지속가능한 패키징 인증\)](#)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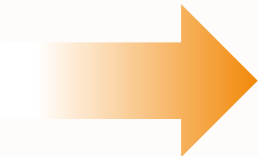
주요 국가별 규제 총 정리

구분	한국	일본(도쿄)	대만	중국	유럽	미국(아마존)
대상제품	화장품류 및 음식료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등	보석·귀금속류 및 미술 공예품 제외한 상품의 소비자 포장	화장품 ·과자· 주류·가공식품 및 SW디스크	식품 및 화장품	모든 포장재	아마존에 등록된 브랜드와 연계 및 적절한 카테고리에 속한 제품
포장방법 의무기준 (화장품 제품 기준으 로 작성)	포장공간비율 15~25%	포장공간비율 20%	포장공간비율 25~35%	포장공간비율 30~85%	세부사항 공개 전	제품 부피와 무게 대비 포장 효율 산정 (기존 규제와 동등 비교 불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횟수 (미제한)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횟수 4차 이내		
	포장비용비율 (미제한)	포장비용비율 15%	포장비용비율 (미제한)	포장비용비율 20%		
방법론 (포장공간비율 기준으 로 작성)	(포장재 부피 - 제품 부피) / 포장재 부피 x 100 *포장재 부피 산정, 제품 부피 산정 간 차이가 있어서 동일한 식으로 보기는 어려움			{포장재 부피 - (내용 물 부피 x 공간계수)} / 포장재 부피 x 100	포장의무 불이행 정도에 비례한 처벌 예정	단위 효율 산정식만 존재하며, 포장공간비율 산정식 無
행정제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방 정부의 지도·권고	3만 신 타이완 달러 ~ 영업정지 및 폐업처분	제품의 중국 내 수입, 판매 금지		자발적 참여항목으로 행정제제 無

국가별 방법론 비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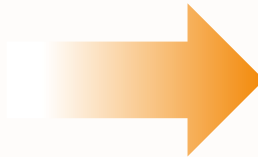
한국·일본·대만·중국 규제 비교 분석 [1/2]

구분	항목	한국	일본(도쿄)	대만	중국
포장공간비율	규제 기준	화장품 종류 구분	화장품 종류 구분없이 일괄 적용	화장품 종류 구분없이 적용(단일소재 완화 적용)	화장품 종류 구분없이, 순함량 기준으로 적용
	공간비율 허용수치	10~25%	20%	25% (단일소재 적용시 35%)	30~85% (50ml를 초과하는 경우 30%)



화장품의 종류, 순함량, 소재 등에 따라 국가별 허용 포장공간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50ml 크림의 경우 한국에서는 10%이지만,
 중국에서는 40%로 30%p 차이까지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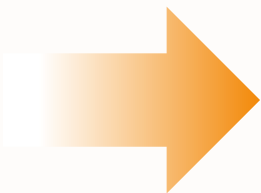
측정방식	포장재 부피 측정 기준	내부 (포장재 두께 10mm까지 허용)	내부 (포장재 두께 제한 없음)	외부	외부
	제품 부피 측정 기준	외접하는 직육면체 (완충재 사용시, 방향별 5mm 가 산하여 산정)	외접하는 직육면체 (완충재 사용시, 방향별 10mm 가 산하여 산정)	외접하는 직육면체 x 공간계수 (화장품의 공간계수 2)	내용물 x 공간계수 (공간계수가 9~80까지 화장품 종류에 따라 적용)



부피 측정 기준에 따라 공간비율 산정 결과가 달라진다.
 포장재 부피를 외부에서 측정하고, 제품 부피에 큰 공간계수를 곱하는
 중국과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측정방식이 엄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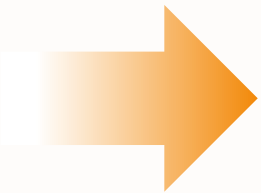
한국·일본·대만·중국 규제 비교 분석 [2/2]

구분	항목	한국	일본(도쿄)	대만	중국
포장 제한	포장 횟수	2차 이내	X	2차 이내	4차 이내
	포장 비용 비율규제	X	15%	X	20%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포장 횟수와 비용 비율 제한이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는 공간비율 뿐만 아니라
 포장재 비용 비율 제한까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행정제재	최대 300만원	지방 정부의 지도·권고	과태료 한화 140만원~ 영업정지 및 폐업처분 가능	제품의 중국 내 수입, 판 매 금지
----	------	----------	-----------------	------------------------------------	------------------------



공간비율, 포장횟수, 포장비용의 정량적 수치와
 더불어 행정제재가 해당 규제의 수준을 결정한다.
 특히, 대만의 경우 공간비율 수치나, 측정방식이 한국보다 완화되어 적용되지만,
 기준 미준수 시, 최대 영업정지나 폐업 처분까지 가능하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기업의 과대포장 규제 대응 Check List

 기업의 과대포장 규제 대응 10대 Check List!

구분	항목	내용
포장 공간 비율	규제 기준	1. 화장품 종류별 기준인지, 화장품 종류가 아닌 기준(순함량, 단일소재 등)이 있는지 확인
	공간비율 허용수치	2. 공간비율이 허용되는 정량 수치를 통한 규제 강도 확인
측정 방식	포장재 부피 측정 기준	3. 포장재 측정 내/외부 기준 확인 4. 포장재의 두께 제한 여부 확인(한국의 경우,10mm로 제한)
	제품 부피 측정 기준	5. 제품 부피 측정 기준 확인(완충재 사용 여부에 따른 5~10mm 가산한 부피로 인정하는 경우와 공간계수를 곱하는 경우 등 국가별로 다양)
포장 제한	포장 횟수	6. 가능한 포장 횟수 확인 7. 포장 횟수 별 공간비율제한이 적용되는지 확인(중국의 경우 1차 포장에 대해서는 공간 비율 제한 미적용)
	포장 비용 비율규제	8. 전체 판매가 대비 포장 비용 비율을 제한하는 규제 확인
기 타	행정제제	9.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및 폐업 처분까지 다양한 리스크 확인
	국가별 특징	10.중국은 내용물을 기준으로 공간비율을 제한하고, 대만에서는 단일소재 제품을 장려하기 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별 특징 파악 필요



<https://kcia.or.kr>

2025 대한화장품협회 지속가능위원회



CHANEL



AMOREPACIFIC



L'ORÉAL
KOREA



Aēsop.

ESTÉE
LAUDER
COMPANIES



COSMAX



Johnson&Johnson

HK Kolmar

